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2619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261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나2000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65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상고인한국무역보험공사

판결 선고 2016. 4. 2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나20001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보증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조건으로서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출대금채권이 실재하는 수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출 거래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가 판시와 같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도록 한 조건을 충족한 대출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수출계약서의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리넷솔라 주식회사(이하 '미리넷솔라'라 한다)는 2008. 10. 29. 홍콩에 있는 렐리수코 리미티드(이하 '렐리수코'라 한다)와 태양광전지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수출거래의 일반거래조건을 정하는 협정서(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협정서는 공급할 태양광전지의 품질·수량·가격에 관한 조건 등 계약물품에 관한 조건, 대금의 지급, 인도, 포장, 선적서류에 관한 조건 등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클레임의 제기기간·근거·방법, 중재조항 등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일응 향후의 공급 수량과 가격을 정하는 한편 개별거래 시에 미리넷솔라가 렐리수코에 실제 가능한 선적수량을 통지하여 쌍방이 최종적인 선적수량에 대하여 합의하고, 제품의 평균 시가가 10% 이상 변경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2) 미리넷솔라는 이 사건 협정서에 따라 개별 거래 시 렐리수코에 공급할 태양광전지의 수량과 가격이 기재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송부하였는데, 위 견적송장에는 기재된 조건에 따라 오퍼(offer, 청약)한다는 취지의 기재와 청약의 유효기간, 그리고 청약에 대한 렐리수코의 유효한

오더(order, 주문)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하단에는 청약자인 미리넷솔라의 서명란과는 별도로 렐리수코의 서명란이 있다.

(3)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제3, 4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면서 미리넷솔라로부터 견적송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받았는데, 견적송장에는 미리넷솔라의 스탬프만 찍혀 있었고,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는 미리넷솔라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미리넷솔라와 렐리수코는 일반거래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정서를 체결한 다음 매 개별거래별로 미리넷솔라가 구체적인 공급수량과 가격을 정하여 견적송장에 의하여 오퍼(청약)를 하고 렐리수코가 이에 대한 오더(주문)를 하여 해당 개별거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이른바 포괄계약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포괄계약에 따라 개별거래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청약서나 주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이를 개별거래의 계약서로 삼을 수 있는데, 미리넷솔라가 청약서로 이용한 견적송장에 렐리수코의 서명란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포괄계약 방식의 무역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도록 한 것은 쌍방의 계약체결 의사가 그 기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으라는 의미이고, 이는 포괄계약 방식의 수출거래에서는 일반거래조건에 관한 협정서에 관하여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출대금채권과 관련된 개별거래에 관하여도 그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쌍방의 의사합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이에 준하는 서면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도록 요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렐리수코의 서명란에 서명이 없어 개별거래에 관한 렐리수코의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견적송장을 받았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는 수출계약서가 아닌 선적서류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서의 특약 및 수출계약서의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 사본'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는 발행인인 운송인이 해당 수출거래의 물품을 선적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다음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의미하고, 그 '사본'은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을 전자적 방식으로 복사한 문서이거나 적어도 사본이라고 표시된 용지에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미리넷솔라로부터 받은 운송인의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선하증권 사본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한 '선적서류 사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또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약의 해석 및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